

## 2020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20년 제2회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1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 야	주요담당업무(직무)	채용 인원	근무예정지(지역) 및 지원코드
청원경찰	○ 청사경비·방호 ○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안내 ○ 청사구역 출입 인원·차량통제 ○ 주·야간 화재예방 순찰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등	2명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 김천 울곡동) <b>"김천"</b> A1
		2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검역계류장) <b>"부산"</b> B1

- ※ 책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응시자는 복수지원이 불가하므로 근무예정지 1곳만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것
- ※ 필수보직기간(2년) 근무 후 타 지역본부로 전보할 수 있음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10조의6(당연퇴직)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및 제4조(임용방법 등)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및 제5조(임용신청서 등)

## 3. 응시자격

### ▶ 아래의 조건(가~자)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적용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며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라.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바.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형태는 근무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아. 임용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이상인 자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자. 학력 및 지역제한 없음

## 4. 우대요건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우대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가.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나. 응급구조사(1, 2급) 자격증 소지자(차등 배점)

다.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차등 배점)

-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 [별첨“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 우대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자기소개서 작성 시, 경력(재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경력(재직) 증명서를 첨부할 것
- ※ 경력(재직)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기관직인, 발급부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함

### < 참고 사항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공인 무도 단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이 아니므로 우대요건이 없어도 응시 가능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5. 가산요건

###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그룹별 차등배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4급 이상, 차등 배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0.12.01.) 기준 3년 이내(2018.02.03. (38회)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6. 시험절차

###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다만, 구분모집(채용예정인원) 단위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
  - 심사 분야별 점수화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채용직렬별 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공인무도 단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근무경력(재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1) 공직가치관, 봉사정신, 책임감 등 공직자에게 필요한 인성검사 실시
- 2) 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3) 인성검사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계획임

※ 인성검사를 미 실시할 경우 면접자격 미 부여

##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를 실시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아래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평가

\* 또한, 면접 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

※ 평정요소 :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 평가

-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들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다시 면접 실시

##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7. 시험 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1. 채용공고	2020.11.16.(월) ~ 11.26.(목)
2. 응시원서 접수	2020.11.27.(금) ~ 12.01.(화) * 주말, 공휴일 원서접수 불가
3.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12.29.(화)
4. 온라인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후 ~ '21.1.15
5. 2차(면접시험)	2021.01.21.(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개별 통보 예정	
6. 최종 합격자발표	2021.02.19.(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 <a href="http://www.qia.go.kr">http://www.qia.go.kr</a> ) 및 나라일터( <a href="http://www.gojobs.go.kr">www.gojobs.go.kr</a> )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 8.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020.11.27.(금)~2020.12.01.(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아래 접수처에 직접접수(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택배, 퀵은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제출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0.12.01.(화) 소인분까지 접수  
분으로 인정하며, 접수여부 및 응시번호는 응시자가 홈페이지 조회 등  
으로 반드시 확인 할 것

(검역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http://www.qia.go.kr) 배너조회 운영 예정)

\* 전산오류 등으로 원활한 조회가 어려울 경우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여부 개별 확인 방법

※ 응시원서 접수 후 다음날 14시 이후 확인 가능 (주말, 공휴일 등 제외)

(예) 응시자 등기우편 발송('20.11.30. 월) → 등기 도착('20.12.01. 화, 15~16시경 도착)  
→ 홈페이지 확인 ('20.12.02. 수, 14시 이후)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겉면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직접접수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행복동 1층 고객센터로 방문

##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 파일에 첨부된 “작성요령” 숙지 후 서식 기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p>1. 응시원서 1부 (붙임1, 필수제출)</p> <p>(1-1) 응시수수료 첨부</p>	<p>※ “응시원서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b>자필로 기재</b></p> <p>※ 응시수수료 미첨부 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수수료 5천원</li> </ul> <p>※ 정부수입인지 구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a href="http://www.revenuestamp.or.kr">http://www.revenuestamp.or.kr</a>)에서 구입 (행정수수료용) · 인쇄하여 응시원서 뒤에 첨부하거나,</li> <li>- 우체국에서 우표형 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일 것(<b>수입증지 미인증</b>)</li> <li>- <b>현금접수 불가</b>; 전자수입인지 또는 우표형 수입인지 부착·제출</li> </ul>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p>
<p>2. 이력서 1부 (붙임2, 필수제출)</p>	<p>※ “이력서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 항목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또는 한글 작성 가능</li> <li>○ 제출 전에 최종 작성자 서명, 성명 기재여부 확인 등 유의사항 숙지 후 작성</li> </ul> <p>※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대로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해 인정 (증빙서류 미비 또는 미첨부 시에는 불인정)</p>
<p>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붙임3, 필수제출)</p>	<p>※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 항목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 용지 총 분량 4매(자기소개서 2매, 직무수행 계획서 2매) 이내, 작성서식 준수 등 유의사항 숙지 후 작성</li> </ul> <p>※ 자기소개서 내용 중 근무경력을 포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사본(증빙자료) 첨부할 것</p> <p>※ <b>향후 합격자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은 별개 사항임</b> (합격 임용자의 호봉 획정은 별도로 자료 제출, 추진됨을 유의)</p>

구 분	내 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4,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출 또는 성명(서명) 누락 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li> <li>○ 자필 기재</li> <li>○ 성명, 서명 등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li> </ul>
5.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검증동의서 1부 (붙임5,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출 또는 서명(서명) 누락 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li> <li>○ 자필 기재</li> <li>○ 성명, 서명 등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li> </ul>
6. 졸업증명서 사본 1부 <b>(전문대이상 졸업자 필수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 배제 등을 위한 자료임</li> <li>○ <b>최종학력 졸업 증명서(전문대, 대학, 대학원)</b></li> <li>※ 외국 대학·대학원인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받아야 함</li> </ul>
7.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대요건 참조</b></li> <li>○ 경비지도사(일반, 기계)</li> <li>○ 응급구조사(1급, 2급)</li> </ul>
8.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b>단일종목에 한함</b>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li> </ul>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성적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2.03. (38회)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성적만 인정</li> </ul>
10.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대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b>자기소개서 작성 시, 경력(재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첨부, 증빙자료로 경력(재직) 증명서를 첨부할 것</b></li> <li>※ <b>미제출시 관련 해당 경력 미인증</b></li> </ul>
11. 주민등록 초본 1부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b></li> <li>※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li> </ul>
12. 군복무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역 복무중인 자는 추가 제출하여야 함</b></li> <li>*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 확인</li> </ul>
13.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붙임 10,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는 증빙자료 및 연번의 일치여부, 서류 누락 여부 확인하여 제출</li> </ul>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응시원서 → ② 수입인지 → ③ 이력서 → ④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⑦ 졸업증명서 사본 → ⑧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 ⑨ 공인무도 단증 사본 → 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 ⑪ 경력(재직)증명서(자기소개서 내용 포함 시 증빙 자료로 첨부할 것) → ⑫ 주민등록초본(남성, 병력사항 포함) → ⑬ 군복무확인서(현역복무증인자) → ⑭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첨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위·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마.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자에 대해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시험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나라일터,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자.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 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변경 공고합니다.
- 차.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054-912-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58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9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9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1년 03월 02일부터 2021년 03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912-0334) 또는 이메일(doraji36@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